#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890

발의연월일: 2021. 6. 18.

발 의 자 : 아수진비 · 강민정 · 김승남

김영배 · 김주영 · 류호정

민형배 · 안호영 · 양양영

어기구・위성곤・윤미향

이규민 · 이수진 · 장혜영

의원(15인)

### 제안이유

최근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심각한 기후위기에 직면하면서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지구 평균 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파리협정을 체결하였고, 각 국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앞다퉈 선언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체제 구축 등을 적극 모색하고 있음.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지난해 그린뉴딜 정책을 수립하고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 하고 있지만, 현행 법·제도가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 등에 한계를 나 타내고 있는바 실효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및 탄소중립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이 고 적극적인 법 · 제도로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음.

특히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부담 및 혜택을 사회·경제·지역·세대 간 불평등이 없도록 공정하게 나누고, 취약한 지역과 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여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이 새로운 경제·사회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투명성, 민주성, 형평성 등을 원칙으로 하는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모델로서 탄소중립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과 205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순배 출량 영(零)을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지속가 능한 환경과 사회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 조).
- 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의 기본원칙을 과학적 분석과 예측에 기반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민주적 참여를 통한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실현 및 세대 간 형평의 실현 등으로 규정함(안제3조).

- 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10년 단위의 중장기감축목표, 에너지산업교통건물 등에 관한 부문별감축목표 및 연도별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이후 첫 중장기목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2017년 대비 100분의 50 이상을 감축하는 것으로 함(안 제10조).
- 라.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탄소중립국가전략,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중앙행 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 시·도지사는 광역추진계획, 시장·군 수·구청장은 기초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 마.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탄소중립위원회를 둠(안 제18조).
- 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탄소중립의 이행과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에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음(안 제24조).
- 사.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문별·기관별로 이행사항을 지도 ·감독하는 등 목표관리를 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 및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안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 아. 정부는 온실가스와 관련한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검증·관리하는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안 제30조).

- 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인지예 산, 온실가스배출세,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 차. 녹색경제의 육성, 녹색생활의 확산, 순환경제의 활성화, 국민참여 및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함(안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 카. 기후위기 감시·예측, 취약성 평가, 기후변화영향평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물·국토·해양 관 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
- 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녹색일자리창출·고용 변동·사업전환의 지원,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 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과 지역에 대하여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음(안 제48조).
- 하.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 운 전환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설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안 제49조).

법률 제 호

#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과 2050년까지 국내 온실가 스 순배출량 영(零)을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환경과 사회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변동을 말한다.
  - 2. "기후위기"란 제1호의 기후변화를 넘어서 이상기후가 심화되어 환경적·사회적·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생태계 붕 괴 등의 위험에 직면한 상황을 말한다.
  - 3. "기후정의"란 모든 사람이 기후위기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고 건 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도록 모든 사회 ·경제·지역·세대 간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 4.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

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삼불화질소 (NF3)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 5.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 6. "온실가스 흡수"란 토지이용, 토지이용의 변화 및 임업활동 등에 의해 대기로부터 온실가스가 제거되는 것을 말한다.
- 7. "온실가스 순배출량"이란 제5호의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제6호의 온실가스 흡수량을 뺀 것을 말한다.
- 8. "탄소중립"이란 제7호의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 9. "온실가스 감축"이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흡수하는 것을 말한다.
- 10. "기후위기 적응"이란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위기의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만들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11. "정의로운 전환"이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부담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산업의 노동자, 중소상공인, 지역사회 등에 전가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 12.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 13. "에너지 전환"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를 제12호의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에너지의 생산, 전달, 소비에 이르는 시스템 전반을 탄소중립 이행에 맞게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 14.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 15.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 16. "녹색산업"이란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온실가스를 발생하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최소화하거나 에너지와 자원 사용의 효율을 높여 재화의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 등을 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이루기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 17. "녹색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 하면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한다.

- 18. "녹색경제"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 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를 말한다.
- 19. "녹색생활"이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
- 20. "순환경제"란 재사용, 재제조, 재활용 등 자원순환 체계의 구축을 통해 자원의 투입과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임으로써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친환경 경제 체제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은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 1. 기후위기 상황의 중대성과 이에 따른 환경적·사회적·경제적 영향 및 국제사회의 대응 흐름에 대한 종합적 인식을 토대로 국가 위기대응 및 발전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이행을 추진한다.
  - 2.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과 「파리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등 국제협상을 고려하여 추진한다.
  - 3. 과학적 분석과 예측에 기반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 에 관한 정책을 마련한다.
- 4. 투명한 정보공개와 민주적 참여를 통하여 기후정의 및 정의로운 전환이 실현되도록 한다.
- 5. 현재 세대의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과 세대 간 형평이 실현되도록 한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계획과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계획과 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제3조의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 제5조(공공기관,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 ① 공공기관, 사업자 및 국민 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은 예산의 수립과 집행, 사업의 시행 등 모든 활동에 있어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탄소중립 이행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 녹색기술,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 환경에 대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민은 생활 전반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법제 및 재정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 및 재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금융 및 세제 조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금 융자금 공급의 적정화 등 필요한 금융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친환 경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세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 제8조(교육훈련 및 홍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민의 인식개선과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하여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②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은 이 법

- 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 ③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2장 탄소중립 국가전략 등

- 제10조(온실가스 감축목표) ①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10년 단위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 야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첫 중장기목표는 2030년까지 온실 가스 총 배출량을 2017년 대비 100분의 50 이상을 감축하는 것으로 한다.
  - ③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에너지, 산업, 교통, 건물 등 부문별 감축목표(이하 "부문별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와 부문별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가 전체와 각 부문에 대한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연도 별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 ⑤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를 기술적·사회적 여건 및 협정에 따라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장기감축목표와 연도별 온실가스 누적배출량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부문별감축목표와 연도별감축목표를 변경할 수 있다.

- ⑥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 부문별감축목표 및 연도별감축목표를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⑦ 그 밖에 중장기감축목표, 부문별감축목표 및 연도별감축목표의 설정·변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탄소중립국가전략) ①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목표·추진전략·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하는 탄소중립 국가전략(이하 "탄소중립국가전략"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탄소중립국가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녹색기술, 녹색산업, 녹색경제, 녹색생활 촉진에 관한 사항
  - 2. 기후정의 및 정의로운 전환 실현에 관한 사항
  - 3. 에너지, 산업, 교통, 건물 등 주요 부문에 관한 사항
  - 4. 재원조달, 조세・금융, 교육・홍보,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정부는 탄소중립국가전략을 5년마다 기술적·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탄소중립국가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제18조

- 에 따른 탄소중립위원회의 심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⑤ 그 밖에 국가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탄소중립기본계획) ①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이하 "탄소 중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탄소중립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한다.
  - 1.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온실가스 농도 변화
  - 2.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 3. 온실가스 배출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및 부문별 · 단계별 대책
  - 4.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 대책에 관한 사항
  - 5.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항
  - 6. 녹색기술, 녹색산업 육성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 7. 환경 · 에너지 · 국토 · 해양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 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 9. 재원조달 및 조세·금융에 관한 사항
  - 10.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 11.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12. 국제협정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13. 그 밖에 탄소중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탄소중립위원회의 심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그 밖에 탄소중립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에너지기본계획) ①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에너지 기본계획(이하 "에너지기 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에너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국내외 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추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 2.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도입·공급 및 관리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 3. 에너지 수요 목표, 에너지원 구성,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에 관한 사항
  - 4. 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공급 및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 5. 에너지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 6.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부존에너지자원 개발 및 이용. 에너지 복지 등에 관한 사항
- 7. 에너지 전환에 따른 산업·고용구조의 변화에 대한 대책에 관한 사항
- ③ 에너지기본계획 및 에너지와 관련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립·시행되어야 한다.
- 1.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에너지 전환을 획기적으로 실현한다.
- 2. 에너지 절약,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등을 통하여 에너지 저소비 ·자원순환형 경제·사회구조로 전환한다.
- 3. 에너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적정가격의 에너지 공급 및 취약계 층에 대한 에너지 이용 혜택 확대 등을 통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한다.
- 4. 에너지 공급원의 다변화 등을 통하여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안 정적인 공급을 강화한다.
- 5. 에너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되, 에너지 공급원의 다변화 등을 위하여 민간부문 과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한다.
- ④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제18조에 따른 탄

- 소중립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그 밖에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중앙추진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탄소중립국가전략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소관 분야의 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탄소중립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광역추진계획)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1조에 따른 탄 소중립국가전략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 탄소중립 추진계획(이하 "광역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 역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광역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지방탄소중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광역추진계획을 종합하여 제18조에 따른 탄소중립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광역추진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광역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지원시책의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기초추진계획)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1조에 따른 탄소중립국가전략, 제15조에 따른 광역추진계획 및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 탄소중립 추진계획(이하"기초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탄소중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 및 소속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초추진계획을 종합하여 제18조에 따른 탄소중립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기초추진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 책을 마련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초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지원시책의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이행현황의 점검 등) ① 제18조에 따른 탄소중립위원회의 위원 장은 제12조에 따른 탄소중립기본계획, 제13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 획 및 제14조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평가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광역추진계획 및 기초추진계획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탄소중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기초추진계획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18조에 따른 탄소중립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한다.
  - ③ 제18조에 따른 탄소중립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점검·평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기관의 정책에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행현황의 점검·평가 및 공개,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의견의 제시 및 반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탄소중립위원회 등

- 제18조(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①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탄소중립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와 제4항제 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당연직위원: 기획재정부장관, 환경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 2. 민간위원: 기업, 노동·시민사회단체, 학계 등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 사람
  - ⑤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전체 위원 중 민간위원의 수가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업별 연합단체,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 및 총연합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소상공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소상공인 단체 및 환경 관련 시민사회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포함시켜야 한다.
- ⑥ 제4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 다.
  - 1.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제10조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사항
  - 3. 제11조에 따른 탄소중립국가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4. 제12조에 따른 탄소중립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5. 제13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 변경에 관한 사항
  - 6. 제17조에 따른 이행상황의 점검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 7. 제41조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8. 제44조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대책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9. 탄소중립과 관련한 법 · 제도에 관한 사항
  - 10.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과 관련한 재원, 금융, 세제, 기금, 교육훈련, 홍보,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11.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정한 사항

- 12. 그 밖에 위원장이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제21조(분과위원회의 등) ① 위원회는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별 소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특정한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그 밖에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22조(사무처) 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한다.
  - ③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

- 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기관·법인·단체 등에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지방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과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탄소중립위원회(이하 "지방위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지방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탄소중립의 이행과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에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탄소중립지원센터"라 한 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 ② 탄소중립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지방자치단체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 2. 지방자치단체 온실가스 감축대책의 수립ㆍ시행 지원
  - 3. 지방자치단체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지원
  - 4. 그 밖에 탄소중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설립 ·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탄소중립지원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장 온실가스 감축

- 제25조(온실가스 목표관리) ① 정부는 제10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문별·기관별로 이행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제26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①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 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시·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매년 설정하도록 하고 그 이행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목표를 준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에 따라 매년 감축실적을 정부에 보고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감축실적에 대하여 등록부를 작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관리기관의 감축실적이 제1항에 따른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⑤ 정부는 관리기관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7조(다배출업체 온실가스 목표관리) ①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기간 내에 달성하여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관리업체와 감축목표 설정에 대하여 혐의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관리업체를 지정하기 위하여 관리업체 및 관리업체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이하 "예비관리업체"라 한다)에게 최근 3년간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수 있다. 이 경우 관리업체 및 예비관리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관리업체는 제1항에 따른 목표를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를 「온실가스 배출 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외부 검

- 증 전문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의 검증을 받아 정부에 제출 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명세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명세서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업체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⑤ 정부는 제4항에 따라 검토한 명세서를 바탕으로 등록부를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⑥ 정부는 관리업체의 감축실적이 제1항에 따른 감축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업체는 개선명령에 따른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⑦ 정부는 관리업체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⑧ 그 밖에 관리업체별 목표의 설정, 명세서의 작성, 등록부의 관리, 개선명령 및 이행, 관리업체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에너지 등의 목표관리) ① 정부는 제10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에너지 전환 목표, 에너지 절약 목표 및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산업, 교통, 건물

- 산업, 가정·상업 등 부문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 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제29조(온실가스 배출정보 등의 공개) ① 정부는 제26조제3항 및 제27 조제5항에 따른 등록부에 포함된 주요 정보를 관리기관별 또는 관 리업체별로 공개할 수 있다.
  - ② 관리기관 및 관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나 영업상의 비밀이 현저히 침해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관하여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관리기관 및 관리업체로부터 제2항에 따른 정보의 비공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비공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정보의 공개 범위·방법·절차 및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① 정부는 국가 및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배출·흡수 계수(係數) 등 온실가스와 관 련한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검증·관리하는 종합정보관리체계 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에너지, 산업, 교통, 건물 등 부문별 소관 분야 및 지역별 정보 및 통계를 작성하여 제 공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검증·관리하 거나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협정의 기준을 최대한 준 수하여 전문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각종 정보 및 통계를 분석·검증하여 그 결과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 및 통계의 세부적인 관리방법, 관리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1조(온실가스인지예산)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이 하 "온실가스인지예산"이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온실가스인지예산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온실가스 배출세) ① 정부는 제2조제4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하여 그 배출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세 (이하 "온실가스배출세"라 한다)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 ② 온실가스배출세의 과세대상, 세율 및 세액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 제33조(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① 정부는 탄소중립을 효율적으로 달

성하기 위하여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이하 "배출권거래제"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배출권거래제의 실시를 위한 배출허용량의 할당방법, 등록·관리 방법 및 거래소 설치·운영 등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 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34조(녹색경제의 육성 등) ① 정부는 녹색기술, 녹색산업 및 녹색경 제를 육성하고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 행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제1항의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 수립에 제1항의 시책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35조(녹색생활의 확산 등) ① 정부는 국민의 녹색생활을 확산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에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등이 합리적으로 연계·반영되도록 하고, 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공개·전달되도록 하여 녹색생활을 촉진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녹색생활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 제36조(순환경제의 활성화) ① 정부는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원료·연료 등의 순환성을 강화하고, 폐기물의 재활용·재사용·재제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7조(국민 참여 및 협동조합 활성화) ① 정부는 탄소중립 이행에 대한 국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민주적 운영과 전체 조합원에 대한 이익 추구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5장 기후위기 적응

- 제38조(기후위기의 감시·예측)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조사하고 기상현 상에 대한 관측·예측·제공·활용 능력을 높이며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감시 · 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

- 기 위하여 조사·연구, 기술개발, 정보시스템 구축, 전문기관의 지원, 국내외 협조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기상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과 제2항에 따른 시책 추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9조(기후위기의 취약성 평가 등) ① 정부는 기후위기가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물환경, 보건, 농림·식품, 산림, 해양·수산, 산업, 방재 등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 위험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국가전략, 기본계획, 중앙추진계획, 광역추진계획 및 기초추진계획과 관련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 및 공개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0조(기후변화영향평가) ①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책 또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소관 정책 또는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해 받게 되 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 시행에 반영하도록 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는 전략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에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1조(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등)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전략, 기본계획, 중앙추진계획, 광역추진계획 및 기초추진계획을 토대로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예방적 관리가 우선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위험에 취약한 지역 및 계층에 대한 보호·지원, 기후위기 현상으로 인한 피해 복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대책 및 제2항의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2조(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물 관리) 정부는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 등에 효과 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 립·시행하여야 한다.
  - 1.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한 수질 개선 및 수생태계의 보전·관 리
  - 2. 홍수, 가뭄 등 수재해에 대비한 치수능력 강화 및 안정적인 수자

원 확보

- 3. 물 절약 등 수요관리, 적극적인 빗물관리 및 하수 재이용 등 물 순환 체계의 정비
- 제43조(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국토 및 해양 관리) 정부는 기후위기로 부터 안전한 국토 및 해양을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산림 · 녹지 등 탄소흡수원 확충
  - 2. 생태축 보전 및 생태계 복원
  - 3. 탄소중립 실현을 고려한 교통, 전력, 항만 등 기반시설의 건설 및 기존 시설의 전환
  - 4. 자연재해로 인한 국토 피해의 완화
  - 5. 국토・해양의 친환경적 개발, 이용 및 보존

## 제6장 정의로운 전환

- 제44조(정의로운 전환대책의 수립·시행) ① 정부는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에 있어 산업구조의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 관련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 및 지역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영향 등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 대책과 재난대비 역 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5조(녹색일자리창출 및 고용변동 지원) ① 정부는 탄소중립 이행에 있어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이하 "녹색일자리"라 한다)를 창출·확대하고, 재취업, 전직(轉職), 전업(轉業) 등 고용변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고용변동을 지원하는 경우 종전 직무와의 관련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교육훈련을 적극 실시하여 고용안정 을 촉진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교육훈련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이하 "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대상, 교육내용 등에 따라 관련 산업의 노동조합 및 사업자단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등 학교가 공동으로 교육실시기관이 될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녹색일자리창출 및 고용변동의 지원의 대상, 선정절차, 지원의 종류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6조(사업전환의 지원) ① 정부는 기후위기 또는 탄소중립 이행 과

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요청하는 경우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 지원의 대상, 선정절차, 지원의 종류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7조(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이하 "특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1.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급격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고용조정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2.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환경의 중대한 변화와 반복적인 자연재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3. 그 밖에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
  - 4. 위원회가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② 정부는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수 있다.

- 1. 「지방재정법」 제23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 2.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용 조정지원 및 고용안정대책 수립
- 3. 산업 및 고용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조치
- 4. 정의로운 전환에 필요한 행정상·금융상의 지원 조치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조치
- 5.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세제상의 지원 조치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정사유가 소멸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특구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8조(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과 지역에 대하여 그 특성을 고려한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이하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 ②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일자리 및 지역사회 영향 관련 실태조사
  - 2. 산업 · 노동 · 지역경제의 전환 방안, 일자리 전환모델의 연구 및

지원

- 3. 재취업, 전직 등 직업전환을 위한 교육훈련 및 취업의 지원
- 4. 업종전환 등 기업의 사업전환에 관한 컨설팅 및 지원
- 5. 관련 법령 · 제도 개선 건의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9조(정의로운 전환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의로운 전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정부의 출연금
  -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5.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다른 기금 또는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의 차입금
  -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

#### 수금(豫受金)

- 7. 제32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배출세
- 8. 제33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거래제의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금
- 9. 기금을 운영하여 생긴 수익금
-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③ 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정의로 운 전환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제5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 1.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구 등에 대한 지원
  - 2.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취약지역 · 계층에 대한 지원
  - 3.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산업·노동·지역경제의 전환 방안, 일자리 전환 모델의 연구·개발 및 지원
  - 4.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
  - 5.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
  - 6.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업, 민간단체의 활동 지원
  - 7.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8.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 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 9. 기금의 조성 ·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 10. 그 밖에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제51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위원회가 운용·관리한다.
  - ②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의 효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정을 설치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 ⑤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장 보칙

- 제52조(국제협력의 증진) ① 정부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및 표준화, 공동 조사·연구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저개발국가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 이행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의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국제협력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및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53조(국제규범 대응) ① 정부는 외국 또는 국제기구에서 제정하거나 도입하려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과 관련한 제도·정책 에 관한 동향·정보를 수집·조사·분석하여 관련 제도·정책을 합 리적으로 정비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 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제1항의 동향·정보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기업·국민들에게 제공하여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54조(국가보고서 등 작성) ① 정부는 협약 및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작성·갱신할 수 있다.
  - 1. 협약에 따른 국가보고서
  - 2. 협정에 따른 국가결정기여에 관한 보고서
  - 3. 협정에 따른 격년투명성보고서
  - 4. 협정에 따른 적응보고서
  - 5. 그 밖에 협약 및 협정에 따른 보고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고서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가보고서 등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

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가보고서 등을 협약의 당사국총회에 제출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보고서 등의 작성 및 자료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5조(국회 보고 등) ① 정부는 국가전략 및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광역추진계획 또는 기초추진 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위원회는 탄소중립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회에 보고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광역추진계획 또는 기초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한다.
  -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회 보고의 시점, 방법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6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후위기대 응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7조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 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2. 제27조제3항에 따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3. 제27조제4항에 따른 명세서의 수정 또는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 4. 제27조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가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0조의 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